

**SACRAMENTO LEGAL OFFICE**

100 Howe Avenue, Suite 235 North, Sacramento, CA 95825-8202

Telephone: (916) 488-9950 Fax: (916) 488-9960

Toll Free/TTY/TDD: (800) 776-5746

Note: When this memorandum was originally published, we were known as Protection & Advocacy, Inc. (PAI). In October 2008, we changed our name from PAI to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 메모

수신: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

발신: Protection & Advocacy, Inc.

제목: 캘리포니아 주 불법 행위 청구법에 의한 대 정부 청구 ( Filing Claims Against the Government Under the California Tort Claims Act)

날짜: 2001 년 8 월 23 일

### 1. 머리말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공 기관(주, 카운티 또는 지방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을 상대로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캘리포니아 주 불법 행위 청구법(California Tort Claims Act)의 요건에 따라 **청구(claim)**를 해야 합니다. California Government (Gov't) Code sections 810-996.6 (캘리포니아 주 정부(정부)법 제 810-996.6 항).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를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6 개월의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적절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행사할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해서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불법 행위 청구법에는 정부를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따라야 할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에서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이 메모는 작성일 현재 발효 중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법률들은 물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른 절차와 일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가능한 청구 및 일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관련 분야 법(예를 들면, 개인적인 피해 또는 의료 과오)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 2. 청구가 필요한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을 수도 있고, 정부에 의해 사망, 신체 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불법 행위(tort)라고 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를 하는 사람은 보통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청구인(claimant)"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청구자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 즉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합니다. Gov't Code sections 905, 905.2.

### 3.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신 또는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정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Gov't Code sections 910, 910.2. "피해"에는 신체적인 부상 뿐만이 아니라 개인 재산(소유물)상의 손해 및 보호 받을 권리의 침해도 포함됩니다.

### 4. 청구하는 방법

카운티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그 기관의 관리 위원회나 서기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Gov't Code section 915(a).

또한 주 정부, 주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주 정부 감독 위원회(State Board of Control, SBC)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서류를 지방 SBC 사무소에 직접 전달하거나, 중앙 사무소로 우송할 수 있습니다. Gov't Code section 915(b). 새크라멘토에 있는 SBC 중앙 사무소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State Board of Control  
Government Claims Branch  
P.O. Box 3035  
Sacramento, CA 95812-3035.  
(916) 323-3564 (전화)  
(916) 323-5768 (팩스)

청구 양식은 SBC의 무료 전화 번호 1-800-955-0045로 전화하여 요청하거나, SBC 웹 사이트 [www.boc.cahwnet.gov/GovClms.htm](http://www.boc.cahwnet.gov/GovClms.ht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전달한 날짜가 청구일이 됩니다. 청구 서류를 우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짜가 아니라 청구 서류를 우송한 날짜가 청구일이 됩니다.

청구 서류를 우송하는 경우에는 **수령증 반송 요청부 배달 증명 우편(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requested)**으로 우송할 것을 권합니다. 독자적인 청구 양식을 사용하는 정부 기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연락하여 그러한 양식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모든 정보(다음 항목 참조)를 기재하는 한, 그 기관의 특정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5. 청구 서류에 기재할 내용

정부법 제 910 항에 의하면 정부 기관에 대한 청구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A. 자신의 이름(청구인의 이름)과 우편 주소;
- B. 우편 주소란 통지서를 배달할 주소를 말합니다;
- C. 청구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행한 날짜, 장소 및 상황 (즉,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설명);
- D. 부상,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E. 피해를 발생시킨 공무원(들)의 이름(들) (아는 경우);
- F. 금액이 \$10,000 미만인 경우에는 달러 청구 금액(향후 발생할 추정 피해 포함)과 그 금액에 대한 계산 근거; 그리고
- G. 금액이 \$10,000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 양식에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제한 민사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법 제 910(f)항 및 캘리포니아 주 민사 절차법 제 85, 86 항.

사건이 "제한 민사 사건"이 될 것인지는 손해 배상 청구 금액과 정부 기관에 요구하는 기타 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구 금액이 **\$25,000 미만**(타당한 변호사 수수료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민사 사건이 됩니다.

- 1. 영구 금지 명령(최종 심리 후에 승인된 법원 명령으로, 정부 기관이 피소 사건에 대해 조처를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명령);
- 2.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판결;
- 3. 가족법에 의거한 명령 집행; 또는
- 4. 선언적 구제(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당사자의 권리와 기타 법적 관계를 확인하는 기술서를 법원에 요청하는 것), 단, Code of Civil Procedure section 86(민사 절차법 제 86 항)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제외.

Code of Civil Procedure section 580(민사 절차법 제 580 항).

## 6. 일정

캘리포니아 주 불법 행위 청구법에는 정부 기관을 상대로 청구를 할 때 따라야 할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피해**(즉, 사망, 신체 부상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Gov' t Code Section 911.2.

피해를 입었을 때 청구 사유의 발생 사실을 몰랐던 경우(예를 들면, 일부 의료 과오 사건)에는 그러한 사유를 알게 되었거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부터 6개월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Whitfield v. Roth (1974) 10 C.3d 874, 112 Cal Rptr 540(Whitfield 대 Roth (1974) 10 C.3d 874, 112 Cal Rptr 540 사건)을 참조하십시오.

## 7. 지체 청구

때로는 청구인이 6개월이 지난 후에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청구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단순히 늦게 청구한 경우와 늦게 청구했으나 "지체 청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 편지를 보내어 지체 청구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Gov't Code section 911.4(a). 편지에는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은 사유(들)를 기술하고 실제 청구 서류를 동봉해야 합니다. Gov't Code section 911.4(b). 지체 청구가 유효한 사유에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실수, 부주의, 경악 또는 이유 있는 태만;
2. 미성년자(청구인이 6개월의 전체 기간 동안 미성년자였던 경우);
3. 신체적 정신적 무능력; 그리고
4. 청구인의 사망.

(Gov't Code section 911.6(b))

청구인은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타당한 시기에 정부 기관에 편지를 보내어 지체 청구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Gov't Code section 911.4(b). 지체의 "타당성"은 사건 별로 결정되며, 사건에 따라서는 짧은 지체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지체 청구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8. 청구를 한 후에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청구를 하면 위원회<sup>1</sup>는 45일 이내에 응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용 또는 거부)을 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응신을 하지 않으면 그 청구는 45일째 되는 날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Gov't Code sections 912.6(a), 912.4(c).

---

<sup>1</sup> Government Code section 900.2에는 "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a) 지방 공공 기관인 경우에는 그 지방 공공 기관을 관리하는 조직
- (b) 주 정부인 경우에는 주 정부 감독 위원회

## 9. 청구가 거부된 경우의 정부 기관에 대한 소송

위원회는 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또는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청구를 거부). 위원회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하면 통지서가 우송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Gov't Code sections 913, 945.6(a)(1).

위원회가 결정(또는 무결정)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고(위의 설명 참조) 청구인은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Gov't Code section 945.6(a)(2).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면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즉, 석방)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Gov't Code section 945.6(b).

다시 말씀 드리면,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다른 일정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할 것을 권합니다.